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동의안

## 검 토 보 고

###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167번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 출 자 : 2022년 8월 29일
- 회 부 일 : 2022년 9월 2일

### 2. 제안이유

- 가. 서울시는 市 평생교육 정책에 따른 전문적인 사업 수행체계를 마련하여 평생교육 진흥 및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평생교육 진흥원'을 운영하고 있음
- 나. 이에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여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 가.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 나. 추진근거
- (공통)법령 : 「민법」 제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개별)법령 : 「평생교육법」 제20조

- 조 레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  
 ‘시장은 진흥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흥원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다. 출연의 필요성

-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수행의 컨트롤타워 및 허브기능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을 지원하고,
- 평생교육 관련 정책 개발 및 연구, 동단위 평생학습센터, 서울시 문해교육 활성화, 서울시민대학 운영, 모두의학교, 서울시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통해 지속 가능한 서울형 평생학습을 구현하기 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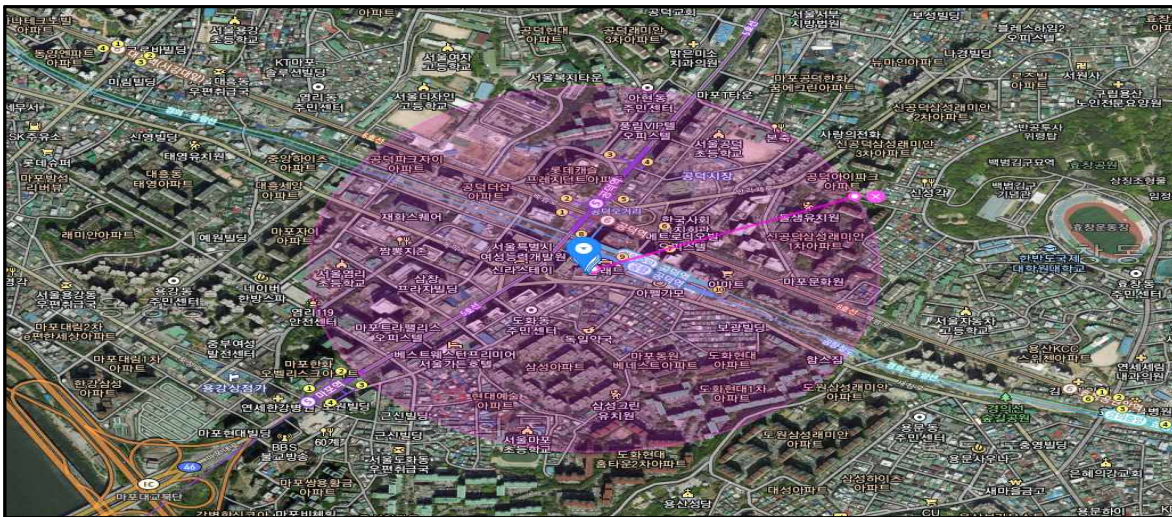
#### 라. 출연 사무내용

-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문화 확산
  - 서울시민 평생학습 참여 실태조사, 서울시 평생교육 계획 수립 기반 마련 등 정책과정 연구·개발, 평생학습 전문 매거진 발간 등 평생학습 문화 확산
- 서울시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 한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 지원, 다양한 평생교육 기관·단체와 네트워크 구축 등 서울 평생학습 허브 역할 강화
- 서울시 문해교육 활성화
  - 문해교육 교원 양성·연수, 디지털 문해교육 등 서울시 문해교육 특화 사업 추진
- 서울시민대학 운영
  - 미래 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인문 교양 및 평생직업 교육 과정 운영
  - 대학의 우수한 교육자원을 활용한 대학과 연계 프로그램 운영
  - 시민 학·석·박사 과정 운영 등 다양한 학습의 명예시민학위제 운영

-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모두의학교 운영
  - 시민참여형 학습 공간 운영 및 혁신모델 전파, 시민 커뮤니티학교 활성화 지원, 도서서비스, 북큐레이션 프로그램 지원 등 모두의 책방 운영
- 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교·강사 양성 및 전문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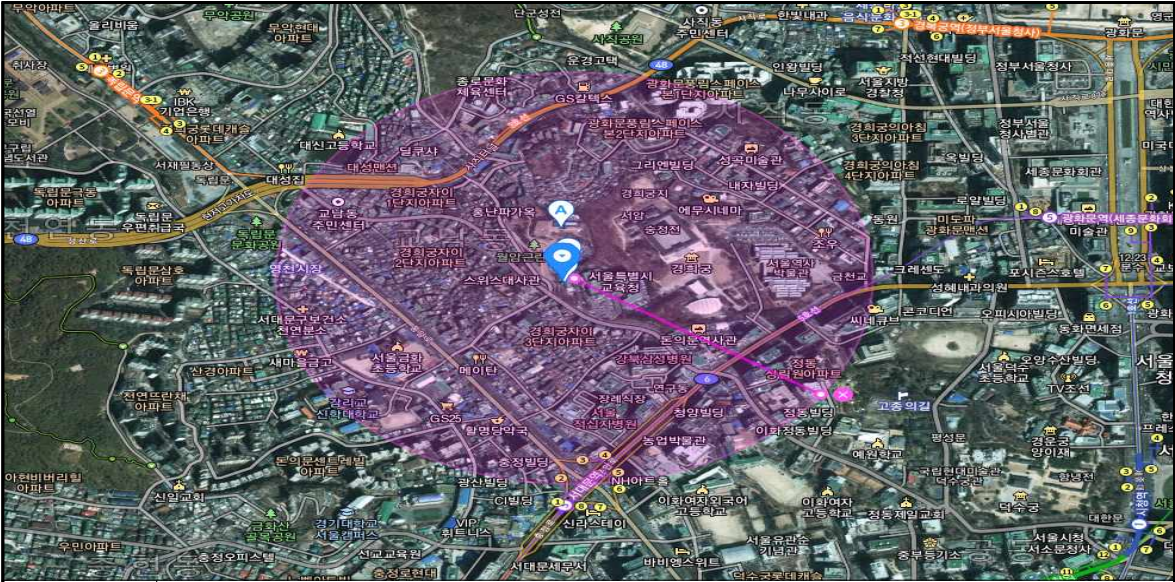
마.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개요

- 평생교육진흥원 본원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 7, SNU장학빌딩 14층
  - 시설규모 : 331㎡(사무실, 회의실1, 강의실1)
  - 위치도



지역여건	지하철 5·6호선, 경의중앙선 공덕역에서 도보 5분
------	------------------------------

- 서울시민대학 본부 캠퍼스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송월길 52
  - 시설규모 : 1,485㎡(강의실, 세미나실, 다목적홀 등)
  - 위치도



지역여건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에서 도보 12분

○ 서울시민대학 동남권캠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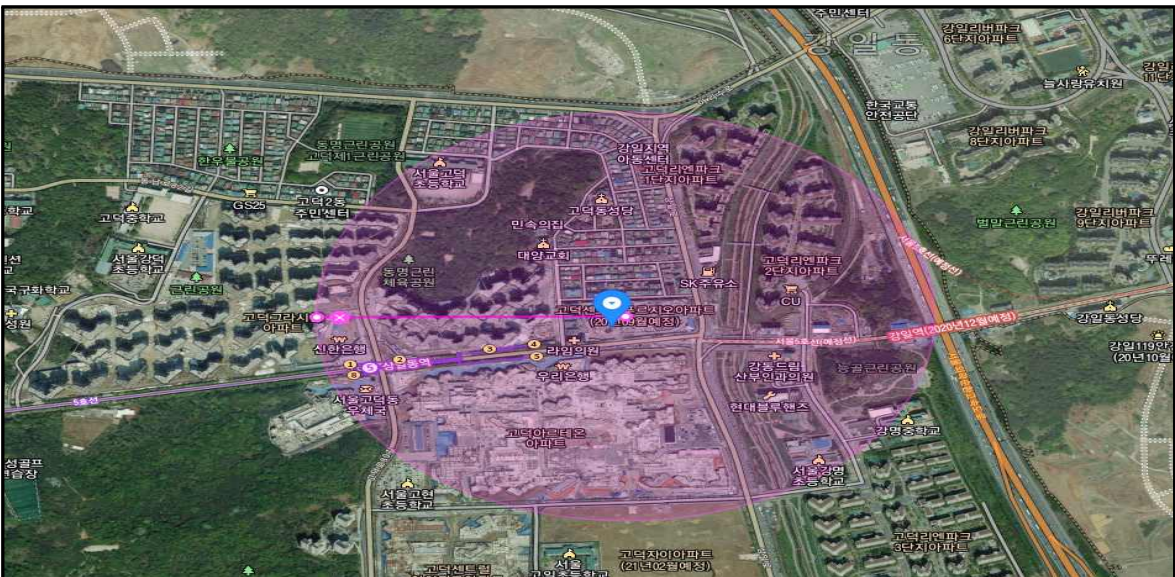
- 소재지 :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399

- 시설규모

· 지상 7,211 $m^2$ (강의실, 세미나실, 다목적홀, 크리에이터부스 등)

· 지하 4,600 $m^2$ (주차장, 기계·전기실 등)

- 위치도



지역여건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에서 도보 3분

○ 모두의학교

- 소재지 : 서울 금천구 남부순환로128길 42
- 시설규모 : 2,462.91㎡(마루교실, 소동방, 강당 등)
- 위치도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붙임1)

○ 출연금액 : 9,541백만원

- 인건비 3,919백만원, 운영경비 1,663백만원, 사업비 3,959백만원

사. 이사회 회의록 : 붙임2

아. 결산보고서 : 붙임3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 의견

- 본 출연동의안은 평생교육 진흥 및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2023 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되었음.

-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개요 〉

- 설립등기일 : 2015. 3. 12.
  - 명 칭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 위 치
    - 진흥원 본원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 7, SNU장학빌딩 14층
    - 모두의학교 :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순환로128길 42
    - 서울시민대학본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52
    - 서울시민대학동남권캠퍼스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399 104동 2~4층
- 설립근거
  - 『평생교육법』 제20조(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3장(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 설립목적
  - 서울시 평생교육 마스터플랜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정책개발
  -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독자적 사업영역 발굴 및 추진체계 구축
  - 지역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및 평생학습 활성화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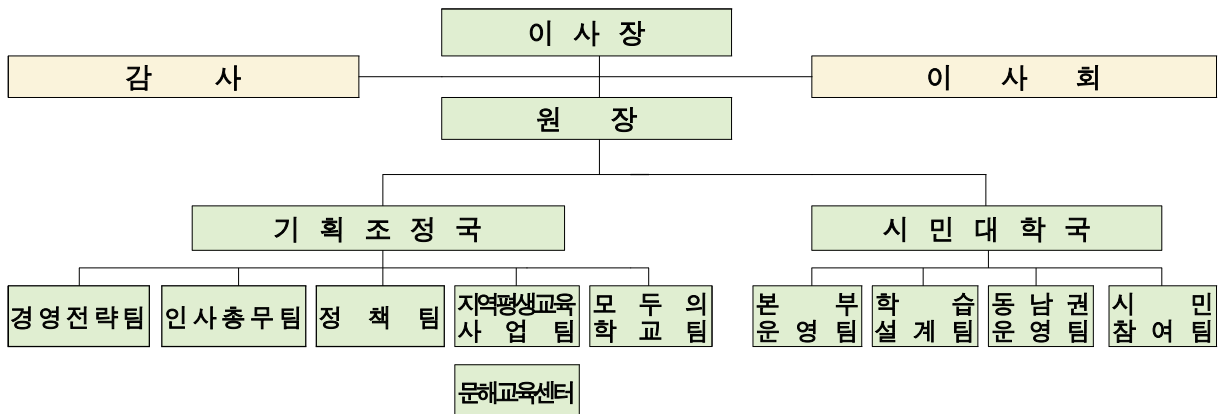
### 〈 평생교육진흥원의 연혁 〉

- 2014.04.03. : 평생교육진흥원 개원(서울연구원 부설)
- 2015.03.05. : 독립 재단법인 설립 및 제1대 김영철 원장 취임
- 2015.05.14. : 조직개편(1국 3팀 : 사무국 → 기획조정국)
- 2017.10.28. : 모두의학교 개관
- 2017.12.27. : 조직개편(1국 4팀 → 2국 6팀)
- 2018.01.01. : 서울자유시민대학 위탁운영
- 2020.01.01. : 서울자유시민대학 고유사무 운영
- 2020.02.27. : 조직개편(2국 6팀 → 2국 8팀 1센터)
- 2020.12.23. : 조직개편(2국 8팀 1센터 → 2국 9팀 1센터)
- 2021.04.05. : 서울시민대학 동남권캠퍼스 운영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이하 '평생교육진흥원')은 2015년 설립되어, 2022년 2국 9팀 1센터(일반직 59명, 기능직 18명), 74명이 총 108억 7천 1백만원(출연금 86억원, 내부유보금 7억 8천 4백만원, 전기이월금 11억 9천만원, 대행사업 1억 9천만원 등)으로 22개의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 평생교육진흥원 조직현황 〉

2국 9팀 1센터



출처 : 평생교육진흥원 제출자료

〈 2022년 평생교육진흥원의 사업추진 현황 〉

단위사업	세부사업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문화 확산	① 평생교육 정책·과제 연구·개발, ② 평생학습 문화 확산
서울시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③ 동네배움터 운영지원, ④ 평생교육 네트워크 강화, ⑤ 우리동네 책방 배움터 사업, ⑥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서울시 문해교육 활성화	⑦ 문해교육 기반 조성, ⑧ 문해교육 특화사업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모두의학교 운영	⑨ 시민참여형 학습공간 운영, ⑩ 혁신 프로그램 개발·운영, ⑪ 시민 커뮤니티학교 활성화, ⑫ 시민 문화서재, ⑬ 모두의 책방운영
서울시민대학 본부캠퍼스 운영	⑭본부캠퍼스 운영, ⑮권역별학습장 운영, ⑯대학연계시민대학 운영, ⑰명예시민학위제 운영, ⑱민간연계 시민대학 운영, ⑲시민대학 홍보
서울시민대학 동남권 캠퍼스 운영	⑳ 동남권 캠퍼스 특화과정 운영, ㉑ 동남권 캠퍼스 정규과정 운영, ㉒ 시민이 만드는 시민지혜오름 과정, ㉓ 동남권 캠퍼스 관리·운영

〈 2023년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예산편성 내역 〉

(단위:천원)

	2022년	2023년	증감액	증감률
출연금	8,678,255	9,541,456	863,201	9.9%
순세계잉여금	1,976,797	583,754	△1,393,043	△70.5%
국고보조금및대행사업비	216,667	-	△216,667	△100.0%
<b>총계</b>	<b>10,871,719</b>	<b>10,125,210</b>	<b>△746,509</b>	<b>△6.9%</b>
고유사업사업비	4,993,767	4,543,068	△450,699	△9.0%
일반관리비	5,102,531	5,582,142	479,611	9.4%
인건비	3,716,398	3,918,654	202,255	5.4%
운영경비	1,386,133	1,663,488	277,355	20.0%
예비비	583,754	-	△583,754	△100.0%



- 평생교육진흥원의 2023년도 출연금은 전년(86억 7천 8백만원) 대비 9.9% (8억 6천 3백만원)를 증액한 95억 4천 1백만원 규모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억 8천 4백만원으로 총 101억 2천 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평생교육진흥원의 예산편성 중 사업비는 전년(49억 4천 3백만원) 대비 9.0%(△4억 5천만원) 감액한 45억 4천 3백만원 수준이고,
- 일반관리비는 전년(51억 2백만원) 대비 9.4%(4억 7천 9백만원) 증액한 55억 8천 2백만원이며, 예비비와 대행사업비는 미편성하여 제출하였음.

〈 2023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예산편성(안) 〉

(2022년 7월 기준, 단위:천원)

분야/부문/정책/단위/세부사업명	2022예산	2023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b>교육</b>	10,871,719	10,125,210	△746,509	△6.9%
<b>고유사업비</b>	4,993,767	4,543,068	△450,699	△9.0%
<b>서울시 평생학습 활성화</b>	761,620	694,220	△67,400	△8.8%
지역 평생직업교육 활성화 플드트라이앵글 사업	-	85,000	85,000	100%
약자동행을 위한 문해학습장 디지털교육 강화	320,750	353,350	32,600	10.2%
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 운영	90,320	90,320	0	0%
지역 평생교육 연계 사업	50,000	75,000	25,000	50.0%
한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 운영 지원	90,550	90,550	0	0%
<b>대학과 학점연계형 교육과정 운영</b>	838,090	837,150	△940	△0.1%
대학 학점 연계 프로그램 운영 지원	631,600	357,000	△274,600	△43.5%
평생학습 교육경비 지원사업	-	300,000	300,000	100%
명예시민학위제 운영	206,490	180,150	△26,340	△12.8%
<b>미래사회 직업 역량 강화</b>	893,140	1,036,001	142,861	16.0%
생애 진로 탐색 및 직무역량 교육과정 운영	157,450	273,280	115,830	73.6%
미래·디지털 교육과정 운영	320,080	142,433	△177,647	△55.5%
생애 전환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415,610	471,840	56,230	13.5%
온라인 평생교육 콘텐츠 개발 운영	-	148,448	148,448	100%

분야/부문/정책/단위/세부사업명	2022예산	2023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b>서울시민대학 캠퍼스 운영 활성화</b>	1,340,426	918,712	△421,714	△31.5%
서울시민대학 운영 자원 발굴 및 지원	240,106	39,020	△201,086	△83.7%
본부캠퍼스 홍보 및 시설운영	-	236,240	236,240	100%
동남권 캠퍼스 홍보 및 시설운영	715,032	643,452	△71,580	△10.0%
<b>배우고 소통하는 모두의학교 운영</b>	688,611	592,565	△96,046	△13.9%
서울형 동행 프로젝트 개발·운영	297,810	236,460	△61,350	△20.6%
시민 커뮤니티학교 활성화 지원	77,450	48,374	△29,076	△37.5%
시민 문화서재 모두의책방 운영	36,210	16,810	△19,400	△53.6%
시민참여형 학습 공간 운영 및 운영 체제 구축	277,141	290,921	13,780	5.0%
<b>서울시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문화 확산</b>	471,880	464,420	△7,460	△1.6%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 과제 연구·개발	272,680	265,720	△6,960	△2.6%
서울시 평생학습 문화 확산	199,200	198,700	△500	△0.3%
<b>일반관리비</b>	5,102,531	5,582,142	479,611	9.4%
일반관리비	5,102,531	5,493,563	391,032	9.4%
인건비	3,716,398	3,918,654	202,256	5.4%
운영경비	1,386,133	1,663,488	277,355	20.0%
<b>예비비</b>	583,754	-	△583,754	△100%
<b>대행사업비</b>	191,667	-	△191,667	△100%

- 정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2002년부터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해 왔고,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적용될 5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이하 '5차 기본계획')은 미수립 상태로, 2023년 평생교육진흥원의 사업에도 5차 기본계획은 미반영된 상태이며,
  - 추후 교육부가 수립할 5차 기본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의 정책·단위·세부 사업의 방향성은 변경이 있을 것으로 보여, 이를 감안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평생교육법」 제9조(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생교육진흥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6. 장애인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정부는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통해 사람이 경제성장의 질과 양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이며, 우리나라가 산업구조의 변화에 적극적이며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원천이라고 평생교육의 의의를 규정하고 있고,

- 서울특별시는 모든 시민들에게 공정한 교육기회, 양질의 교육 등을 제공하기 위해 평생교육의 시행, 정책개발 등을 위해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였으며,
- 동단위평생학습 지원, 문해교육(Digital Ageing, Digital Literacy 포함), 시민대학, 모두의학교,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의 체계를 구축하고, 활성화하는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출연은 필요하다고 보여짐.

○ 다만, 2023년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여부에 대한 동의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정한 사업을 배치하고 있는지 여부, 정부와 서울특별시의 평생교육 정책을 사업에 반영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 COVID19로 인한 평생교육의 격차, 노년의 학습수요, 「평생교육법」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및 ‘평생학습 이용권’이라는 개념의 법률 명시 등은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의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를 평생교육진흥원의 2023년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첫째, 지난 2년간 사회적 거리두기(COVID19)로 인해 평생학습의 방식도 대면에서 온라인 교육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이러한 변화는 온라인 방식에 익숙하지 않거나, 온라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디지털 취약계층에게는 불평등으로 다가올 수 있는바, 평생교육 기회의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이 2023년 평생교육진흥원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평생교육진흥원은 2023년 ‘약자동행을 위한 문해학습자 디지털교육 강화’를 위해 전년(3억 2천만원) 대비 10.2%(3천 2백만원) 증액한 3억 5천 3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2023년 평생교육진흥원의 디지털 약자를 위한 교육 사업 〉

(단위:천원)

	2022년	2023년(안)	증감액	증감률
약자동행을 위한 문해학습자 디지털교육 강화	320,750	353,350	32,600	10.2%
일반운영비	20,550	14,250	△6,300	△30.7%
연구개발비	60,000	0	△60,000	△100.0%
행사홍보비	102,000	46,100	△55,900	△54.8%
민간사업지원금	108,200	198,600	90,400	83.5%
자산취득비	30,000	94,400	64,400	214.7%

○ 기존 디지털 문해교육기관 지원(18개소)은 유지하고, 신규 기관 20개소를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예산(9천만원)과 디지털 문해교육을 위한 기기 구입 예산(6천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디지털 문해 학습장을 2026년까지 100개소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음.

## 〈 평생교육진흥원의 디지털문해학습장 조성(안) 〉

(단위:개소)

2022	2023	2024	2025	2026
20	40	60	80	100

출처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제출자료

- 디지털 문해교육 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와 디지털 기기 구매 예산의 증액은 디지털 교육의 저변화, 원활하고 효율적인 평생교육 여건마련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실제 평생교육진흥원이 제공하는 디지털 평생교육에 평생교육 약자들의 편입을 유도할 수 있는지 여부, 평생교육에 편입된 디지털 소외계층이 양질의 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COVID19에 대한 인식이 ‘코로나 극복’에서 ‘위드코로나(with COVID19)’로 변경되어, 대면교육에서 비대면교육으로 교육방식의 전환은 불가피하고, 디지털 환경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여 강사의 보수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개발이 지속적으로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은 디지털 문해교육을 위한 콘텐츠 개발 예산(6천만원)과 디지털 문해교육 홍보를 위한 예산(5백만원)도 전액 삭감하고 있음.
- 이는 평생교육의 질적 성장을 도외시하고 가시적 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시설 조성과 같은 양적 성장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평생교육의 양적성장과 질적성장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평생교육진흥원의 예산배분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한편, 평생교육진흥원의 홍보 중 지면홍보는 이슈브리프 제작 1천만원, 통합브로슈어 7백만원, 연차보고서 1천만원 등이 2023년 예산에 반영되었으나, 지면 홍보 대부분은 기관소개 등 서울평생교육의 전반을 소개하는 수단이고, 지면홍보를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는 각 지역의 디지털 약자들에게 배포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세한 정보전달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 평생교육진흥원 홍보의 주력수단인 SNS 활용(4천 8백만원), 미디어·콘텐츠 홍보(2천만원) 등은 2023년 예산에 편성하고 있으나, 디지털 약자에게 SNS 등과 같은 온라인 홍보가 효율적 방법으로 보이지 않는바, 평생교육진흥원의 홍보방식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온라인 홍보와 교육 등은 디지털 소외계층에게 평생교육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바, 디지털 약자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는 공급자 편의를 위한 방식은 지양하고, 수요자 중심의 홍보방식을 수용·활용 등 연령별, 대상별, 계층별 홍보방식의 다양화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 둘째, 2023년 평생교육진흥원 예산안 중 노년 평생학습 수요자에 대한 사업은 없으며, 2022년 '서울시 노년 학습자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노년 학습자를 위한 예산은 2023년에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100세 시대 노령층 평생학습 수요에 대한 준비와 대응은 미흡한 것으로 보임.
  
- 진흥원의 대표적인 평생학습 제공기관인 시민대학의 4개 캠퍼스에서는 인문학 등(미래학, 생활환경학, 사회경제학, 문화예술학, 시민학, 서울학)을 연령에 관계없이 운영하고 있으나, 노년의 평생학습 수요자에게는 적절한 평생학습 또는 교육이라고는 보이지 않으며

- 모두를 위한 평생교육공간이라고 불리우는 ‘모두의학교’에서도 노년의 평생 학습 수요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단 1개이며, 프로그램의 이름(‘꽃할배·꽃할매 놀이터’)만으로는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는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등 노년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공간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보이는바, 평생교육진흥원은 노년의 평생학습 수요자의 필요와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노년 학습자의 평생 교육 참여를 촉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교육부의 ‘2021년 국가평생교육통계조사(발표일:2022.1.20.)’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만25~79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30.7%이며, 노년층(65~79세 노년의 참여비율은 19.2%, 25~34세 청년층의 참여율은 40.6%) 참여율이 21.4% 낮게 나타나고 있음.

〈 대한민국 성인 평생학습 참여 실태 〉

(단위:%)

연령	전체 참여율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25~34세	40.6%	2.8%	38.5%
35~44세	35.2%	0.6%	34.9%
45~54세	32.7%	0.4%	32.3%
55~64세	25.6%	0.1%	25.5%
65~79세	19.2%	0.2%	19.2%

\* **형식교육** : 초·중·고등학교나 대학(원)과 같이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졸업장이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등 학력보완교육 포함)

\*\***비형식교육** : 정규교육 이외의 구조화된 학습활동으로, 공식적인 학위나 졸업장 취득을 우선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을 통해 이뤄지는 교육 (예: 직장에서 받은 직무연수, 학원 수강, 대학의 평생교육원 수강 등)

출처 : 교육부 홈페이지(2021 국가평생교육통계조사 중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발췌 및 재구성

- 전국적으로 평생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대부분 성인(25~65세) 위주로 제공되고 있고, 노년층 학습자를 위한 프로그램의 비중은 0.8% (16만 4천개 프로그램 중 1,372개)에 그치고 있음.
- 우리사회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가까운 시일 내에 노년의 평생교육 수요자도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데, 수요와 요구에 맞춘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노령인구를 평생학습의 참여자로 유인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연도별 수요대상별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연령별 프로그램 현황 〉

(단위:개,%)

	2018		2019		2020		2021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전체	163,631		184,214		194,772		164,865	
어린이	21,063	12.9%	21,753	11.8%	21,140	10.9%	14,406	8.7%
청소년	4,632	2.8%	4,769	2.6%	5,101	2.6%	4,087	2.5%
성인	122,890	75.1%	141,351	76.7%	152,613	78.4%	134,663	81.7%
노인	2,416	1.5%	2,535	1.4%	2,561	1.3%	1,372	0.8%
통합	12,630	7.7%	13,806	7.5%	13,357	6.9%	10,337	6.3%

출처 : 교육부 홈페이지(2021 국가평생교육통계조사) 발췌

- 셋째, 「평생교육법」에 따른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는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규정이나, 평생교육진흥원의 2023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활성화 등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평생교육법」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평생교육법」제15조의2(장애인 평생학습도시) ① 국가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자치시, 시·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다.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는 지역이 중심이 되어 장애인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입하였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심사를 통하여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함.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편의시설 구축과 장애인 평생교육 이동권 및 접근성 확보 등 지역의 장애인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 출처 : 조인식(2022),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과 개선과제, NARS현안분석 제250호

○ 평생교육진흥원은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을 운영하기 위해 2023년 출연금(95억 4천 1백만원)의 100분의 1 수준인 9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2023년 평생교육진흥원의 장애인 평생교육관련 예산 편성내역 〉  
(단위:천원)

세부사업/통계목	2022년	2023년	증감액	증감률
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 운영	90,320	90,320	0	0.0%
일반운영비(201)	6,550	7,100	550	8.4%
행사홍보비(216)	80,770	31,220	△49,550	△61.3%
연구개발비(207)	0	40,000	40,000	100.0%
민간사업지원금(321)	0	12,000	12,000	100.0%

- 본 사업의 ‘일반운영비(710만원)’는 연수(워크숍, 280만원)와 네트워크 운영(3백만원)이며, ‘행사홍보비(3천 1백만원)’는 연수(워크숍, 2천 4백만원)와 성과공유회(7백만원)이고, ‘연구용역비’ 4천만원과 민간사업지원금(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컨설팅) 1천 2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3년도에 진흥원이 장애인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은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컨설팅뿐이며, 장애인 평생교육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닌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운영’에 대한 컨설팅으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은 없는 상황으로 보임.
- 장애인은 지체장애, 청각·시각 장애 등 유형과 정도가 다양하여 장애의 특성과 정도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은 가능하지만, 이를 실제 교육과정에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으로,
  -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예산확대와 장애인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장애의 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및 이를 전담하는 인력과 조직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장애인 평생교육은 강사의 장애 이해도 및 전문성에 따라 그 질적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 장애인 평생교육의 질이 균등하지 않다는 지적(교육부, 2019년,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실태 조사)이 있었으나,
  - 장애인 평생교육 강사양성은 장애인 평생교육의 거점기관인 평생교육진흥원의 필수 기능으로 보이나, 평생교육진흥원은 2022년 장애인 평생교육 강사 양성 예산 5천 6백만원을 2023년도에는 전액 삭감하였는바,
  - 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지와 치밀한 계획을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간 강사의 역량 차이로 발생하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강사양성 및 보수교육 등의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점검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2023년 평생교육진흥원의 장애인 평생교육 강사 양성 관련 예산 〉  
(단위:천원)

세부사업/통계목/세부항목	2022년	2023년	증감액	증감률
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 운영	90,320	90,320	0	0.0%
행사홍보비(216)	80,770	31,220	△49,550	△61.3%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연수	22,000	24,000	2,000	9.1%
장애인 평생교육 교·강사 양성 교육 운영	56,000	0	△56,000	△100.0%
성과공유회 운영	2,500	7,000	4,500	180.0%
감염병 예방물품 구입	270	220	-50	△18.5%

- 넷째, 평생학습 이용권은 평생교육 소외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이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평생교육법」이 개정된 2021년 6월부터 지방자치단체도 평생교육 이용권(또는 평생교육 바우처)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발급·사용·상담,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평생교육국도 ‘2022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통해 2023년부터 평생학습 바우처를 예산에 반영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학습 이용권 관련 준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경제사회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격차 완화 및 저소득층의 자기개발 등을 위한 평생교육국과 진흥원의 실질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2023년 평생교육진흥원의 예산편성은 목적사업을 충실히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중·장기적인 정책 설계를 기반으로 목적사업 이행을 위한 사업과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평생교육법」제16조의2(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소외계층에게 우선적으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신청자의 요건을 정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및 수급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 증명·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이하 생략)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평생교육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5(평생교육이용권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생교육이용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략) 전담기관 (이하 “평생교육이용권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

2. 그 밖에 평생교육 관련 업무 수행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② 평생교육이용권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사용 관리

2. 평생교육이용권 사용에 관한 상담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4.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생교육이용권전담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다섯째, 평생교육진흥원은 2023년에 장학금,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 등 총 5개의 신규사업을 총 12억 5천 1백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신규사업 추진의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2023년 평생교육진흥원 신규사업 현황 〉

(단위: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사업개요	비고
평생학습 교육경비 지원 사업	300	- 저소득·취약계층 성인 대상 직업훈련 장려를 위한 평생학습 교육 경비(장학금)를 지원하여 평생직업교육 참여 기회 촉진	신규
지역 평생직업교육 활성화 골든트라이앵글 사업	85	- 자치구-기업-대학 간 컨소시엄을 통해 시민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기회 제공 및 자치구 지원	신규
대학 학점연계 프로그램 운영 지원	357	- 서울시민대학교와 관내 대학의 학점연계 및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 ·서울시립대 연계 예비학위과정 운영 지원 사업	기존사업 재구조
생애진로탐색 및 직무역량 교육과정 운영	273	- 시민이 가진 재능기반 진로설계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재능발견과정 ·진로탐색과정 운영 ·성장지원과정 운영 ·미래직무 역량과정 ·시민지혜오름공간 운영	기존사업 재구조
서울형 동행 프로젝트 개발·운영	236	- 서울형 동행 프로젝트 개발·운영 · 교육디자인툴킷, 주제중심·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운영 ·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 연구·개발 및 시범운영	기존사업 재구조

- “평생학습 교육경비 지원 사업”은 직업교육 등의 평생학습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저소득·취약계층의 직업훈련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는 공감할 수 있으나,
- 공공기관의 장학금 지급은 규정(지급범위, 지급대상, 지급 규모, 지급요건 등)에 따라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의 조례, 평생교육진흥원의 정관, 내규(인사규정 등 24개) 등에는 본 장학사업의 규정이 없는데, 근거 없는 장학사업은 부적정한 것으로 보여짐.

※ 「장학금규정」제1조 교육법 제15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방법과 그 지급을 받을 자의 자격과 의무에 관하여는 교육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 한편, 서울특별시는 각 실·국 등이 산발적으로 추진하던 장학사업의 공정성, 신뢰성, 효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장학재단을 설립하였는바, 평생교육진흥원이 서울장학재단의 사업 외 별도의 장학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성이 적은 것으로 사료됨.
- 또한,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평생교육과정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는 평생교육이용권 (또는 평생교육 바우처)을 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발행할 수 있으며,
  - 평생교육국도 2023년부터 사업시작을 계획하고 있고, 본 장학사업이 정부 사업 및 서울특별시 사업과 중복사업으로 보이는바, 예산심의 시 본 사업의 추진 필요성 뿐만 아니라 중복성 여부에 대해서도 고려한 예산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평생교육진흥원은 본 사업이 직업훈련에 특화된 지원이라는 점을 강조할 수도 있으나, 정부는 직업교육·훈련비를 특정하여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이미 시행하고 있어, 평생교육진흥원의 장학사업 추진은 근거없는 중복사업으로 보이는바, 본 사업의 추진은 적정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국민내일배움카드

- 대상 :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한 국민 (제외 : 공무원, 사립교원, 만75세 이상자, 월평균소득 3백만원이상+45세 이상자, 연매출 1억5천이상의 자영업자 등)
- 지원 : 5년간 300~500만원 (교육비의 45%~85% 지급)  
(추가지급 : 중위소득50%이하, 국가특화훈련 참여자 등)
- 신청 : 직업훈련포털HDR-NET

- 평생교육진흥원은 2023년 자치구의 평생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사업으로 “지역 평생직업교육 활성화 골든트라이앵글 사업”을 8천 5백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예정임.

〈 “지역 평생직업교육 활성화, 골든트라이앵글 사업” 예산편성 〉

(단위:천원)

세부사업/통계목/세부내역	2022년	2023년	증감액	증감률
지역 평생직업교육 활성화 골든트라이앵글 사업	-	85,000	85,000	신규
<b>일반 운영비(201)</b>	-	9,500	9,500	신규
사무관리비(일반수용비_인쇄/제작비)	-	4,500	4,500	신규
- 성과자료집 인쇄비	-	4,500	4,500	신규
사무관리비(회의 수당)	-	4,000	4,000	신규
- 자치구 평생직업교육 선정 심사	-	1,000	1,000	신규
- 자치구 평생직업교육 자문 회의	-	3,000	3,000	신규
사무관리비(회의비)	-	1,000	1,000	신규
- 자치구 평생직업교육 선정 심사	-	100	100	신규
- 자치구 평생직업교육 자문 회의	-	500	500	신규
- 사업 중간점검 현장모니터링	-	400	400	신규
<b>행사홍보비(216)</b>	-	15,500	15,500	신규
행사운영비	-	11,000	11,000	신규
- 자치구 평생직업교육 역량강화 컨설팅 워크숍	-	5,000	5,000	신규
- 자치구 평생직업교육 성과공유회	-	6,000	6,000	신규
광고선전비	-	4,500	4,500	신규
- 사업성과 영상 아카이빙 제작	-	4,500	4,500	신규
<b>민간사업지원금(321)</b>	-	60,000	60,000	신규
지원금	-	60,000	60,000	신규
- 자치구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 지원금	-	60,000	60,000	신규

- 골든트라이앵글(golden triangle)은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되었던 교육부의 제4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배경이며, 평생교육의 주요 추진과제의 원칙과 같은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은 자치구 직업평생교육 지원·선정과 워크숍 등을 위한 사업으로 명명하고 있음.
- 정부가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과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사용하는 사업의 내용이 상이한바, 적절한 사업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시민들의 혼란 예방과 용어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본 사업의 명칭을 정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2022년까지 시행되는 제4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개념을 제5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이 시행되는 시점인 2023년도에서야 적용하고 있어, 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교육은 정부의 추구하고자 하는 평생교육의 정책 목표와 기본방향에 둔감한 것으로 보이는바, 정부,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교육의 정책적 방향성이 서로 상이한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또한, 골든트라이앵글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는 것은 단순한 직업교육의 지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역량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해 양극화 완화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을 통한 개인의 역량제고 외에 골든트라이앵글을 위한 일자리 제공 등의 사업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 본 개념을 실제 달성하려는 노력없이 자치구 지원을 위한 명분으로만 사용한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성과쌓기식 사업 추진은 지양하고 평생교육의 본질적 목표인 능력개발, 자아실현, 행복추구 등을 위한 실질적 사업추진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결론적으로, 서울시 평생교육의 허브역할을 하고, 정책개발 및 연구, 평생교육기관을 운영 및 지원하는 진흥원에 대한 출연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 노년의 학습자, 장애인들과 같은 평생교육 분야의 약자들에게 적절한 홍보와 평생교육을 제공할 계획과 사업이 있는지 여부, 정부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등 모든 시민들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2023년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전 문 위 원	김 정 덕
입 법 조 사 관	정 찬 일